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3년 09월 15일

정선읍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열	이 *열 1961-06-05	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	직권말소 2023-09-15
유 *정	유 *나 1997-02-23	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	직권말소 2023-09-15
유 *정	유 *정 1994-01-20	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	직권말소 2023-09-15